

2007년도
행정사무감사계획(案)



건설문화위원회

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(案)

1. 감사의 목적

- 지방자치법 제36조, 동법시행령 제17조의2,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에 관한 추진상황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,
- 행정수행상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여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,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감사기간

- 2007년 11월 21일 ~ 11월 30일(10일간)

3. 감사대상기관

구 분	본청 및 직속기관(사업소 포함), 법인단체
당연기관	○ 건설재난관리본부(5개과, 1개 사업소) ○ 문화관광환경국(5개과, 1개 사업소) ○ 소방본부(2개과, 8개 소방서) ○ 생명산업추진단(2개과)
본회의 승인기관	○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○ 충청북도체육회,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○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

※ 지방자치법제17조의3(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)

4. 감사반 편성

감사반장	감사위원	사무보조
송은섭	이언구, 김법기 김인수, 김화수 오용식, 최재욱 한창동	전문위원 신승우 보조직원 박종빈 김영석

5. 감사일정 및 장소

일정		대상기관	감사장소	비고
11. 21(수)	10:30	○ 건설재난관리본부 - 업무보고 및 감사	건설문화회의실	
11. 22(목)	10:30	○ 문화관광환경국 - 업무보고 및 감사 ○ 재)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- 업무보고 및 감사	건설문화회의실	
11. 23(금)	10:30	○ 소방본부, 생명산업추진단 - 업무보고 및 감사	건설문화회의실	
11. 26(월)	10:30	○ 충청북도체육회, 도 생활체육 협의회, 도 장애인체육회	체육회의실	현지
	15:00	○ 도로분야(가덕 우회도로)	청원가덕	
11. 27(화)	10:30	○ 하수종말처리장 분야 ○ 소방분야	청주산단 도소방본부	
	15:00	○ 소방분야	충주소방서	
11. 28(수)	10:30	○ 하천분야(수해상습지)	진천	
	15:00	○ 환경오염점검(골프장)	청원(오창) 충주	
11. 29(목)~ 11. 30(금)	10:30	○ 현지확인 및 감사결과 종합검토, 감사보고서작성	건설문화회의실	

※ 감사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

6. 주요감사사항

-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실적이 저조한 사항
- 현안사업으로서 추진상 문제점이 예상·발생된 사업
- 각종 지원사업 중 타당성 결여 및 실적이 저조한 사업
- 관련단체 및 주민의견 (간담회, 현장확인서)
- 각종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도정시책 추진사항
-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
- 도정질문·답변사항의 사후관리 실태
-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운영 중 지적된 사항
- 민원처리사항
- 기타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사업 전반

7. 감사 요령

(1) 감사 방법

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현황 청취 후 자료 제출 요구, 질의·답변, 현지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

- 업무보고 청취, 질의·답변
- 자료제출 요구를 통하여 제출되는 서류의 확인
- 증인출석 요구를 통하여 출석하는 증인으로부터의 증언청취
- 참고인 출석 요구를 통하여 출석하는 참고인으로부터의 진술청취
- 문서 또는 현지확인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사실 확인 및 증거수집

(2) 감사자료 제출요구

-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2007년 11월 9일까지 피 감사 기관별로 30부씩 제출한다.
- 각 감사위원은 위 자료 외에 요구할 자료가 있을 시 2006년11월 5일까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한다.
- 감사위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로 국한한다.

(3) 관계공무원 또는 법인 관계자 출석·증언요구

- 관계공무원 또는 법인관계자 출석·증언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의장에게 요구한다.
- 대상은
 - 문화관광환경국 : 국장, 각 과장, 청남대사업소장
 - 건설재난관리본부 : 본부장, 각 팀장, 도로관리사업소장
 - 소방 본부 : 본부장, 각 과장, 각 소방서장
 - 생명산업추진단 : 단장, 각 과장
 - (재)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: 원장, 부원장, 조사연구실장, 지원관리부장
 - 충청북도체육회 : 사무처장, 사무차장
 -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, 장애인체육회 : 사무처장으로 한다.
- 그 외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·증언요구는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방법으로 요구한다.

(4) 선서 요령

- 선서는 피 감사 관계공무원 및 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.
- 소관 국·본부장, 소방본부장, 생명산업추진단장 및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기타 공무원 및 법인관계자는 서명날인만 한다.
-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는 위원장(감사반장)만이 기립하여 받는다.
- 위원장(감사반장)은 선서 전에 그 취지와 처벌규정이 있음을 설명한다.

(5) 감사 진행 순서

- 감사선언
- 위원장(감사반장) 인사
- 피 감사공무원 및 관계자 증인선서
- 업무현황보고 및 청취
- 질의·답변 및 현장 확인
- 감사종료 인사
- 감사종료 선언

8. 감사관계 서류제출

- (1) 2007년도 주요업무(신규·역점)추진 현황 (업무계획 및 실적)
 - 2007년 예산집행(목별)현황 포함
- (2)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- (3) 촉구·건의사항 처리결과
- (3)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(붙임)
 - 항목별 사업개요, 추진실적, 향후계획, 추진상 문제점, 대책, 기대효과

과 등 기재

※ 주요업무추진상황(신규·역점) 및 예산집행 현황 작성
기준일 : 2007. 10. 31현재

9. 감사결과보고서 작성

(1) 방 침

- 감사보고서는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작성한다.
-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, 기간, 대상기관, 주요감사내용 등 감사경위와 시정개선 요구사항 촉구 및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와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.

(2) 작성 요령

-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식을 사전에 배부
- 감사종료 직후에 각 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를 위원장(감사반장)에게 제출
- 감사위원 의견을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(안)을 작성·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.

< 별표1 >

2007년도 예산 집행현황

【총 괄】

(단위:천원)

실과별	예산액	집행액	잔액(집행계획)	비 고
계				

【0 0 팀·과】

(단위:천원)

목	사 업 명	사업 량	추진실적 (완료일)	예산액	집행액	잔 액 (집행계획)	미집행 사유
합계							